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 0 2 3 . 6 . 1 5 . (목)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83
제출일자 : 2023. 5. 31.
회부일자 : 2023. 6. 2.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서석영 의원 외 23명

2. 제안 이유

-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자 중요한 경관자원인 마을숲을 보전·관리하여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관 개선을 도모하고,
- 경상북도에서는 올해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경북형마을숲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등 마을 경관개선 등에 대한 정책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마을숲 보전·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계획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다. 관련사업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우수 마을숲에 대한 지정 및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예산수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불임
- 법제심사(입법정책담당관실) : 불임
- 규제개혁 심사(법무혁신담당관실) :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실) : 부패 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의견(산림산업관광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년 6월 5일 ~ 6월 10일
- 관계법령 : 「산림기본법」 제4조, 제6조, 제20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 본 조례안은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인 마을숲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공동체 회복 및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는 “마을숲”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으로 ‘역사·

민속·학술·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숲(생물·무생물·지형·하천 등 자연물과 인공 시설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청의 「전통 마을숲 보전관리 지침」¹⁾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안 제3조는 마을숲을 지역의 경관자원 및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이며,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마을숲 실태 및 현황, 마을숲 관리를 위한 연구 및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는 보전·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 시책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마을숲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수목 및 조경 관리, 관광자원개발, 마을숲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의 사업추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7조는 도내에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마을숲에 대하여

1) 문화재청 「전통 마을숲 보존관리 지침」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숲의 보존·관리에 적용한다.

‘우수 마을숲’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우수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숲의 보전 및 관리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8조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며,
- 안 제9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군, 마을자치회, 민간단체 또는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종합 의견

- 마을숲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전통 마을경관의 핵심요소로서, 마을숲의 체계적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자 중요한 경관자원인 마을숲을 보전·관리하여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형식, 내용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산림청²⁾, 문화재청³⁾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 산림문화자산

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을숲 조성 및 관리 사업 추진 중.

3) 「전통 마을숲 보존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중.

지정 및 지원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사업, 숲길보전 사업 등 유사 사업들과의 중복 및 연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경북도 마을숲 조성 지원 현황

경북도 마을숲 조성 지원 현황

연도별	사업량	재원별 내역(백만원)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지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16.8ha	1,990	845	403.5	741.5		
2006	1.0ha	200	100	30	70	포항 북구 청하(청계숲)	
2009	2.0ha	200	100	30	70	영주 봉현 대촌리(주송골)	
2010	1.0ha	200	100	30	70	울진 읍 정림리(정림송정)	
2011	1.0ha	110	55	16.5	38.5	문경 가은 성저리(청솔공원숲)	
2012	3.1ha	100	50	15	35	포항 북구 청하(상대마을숲)	
2013	0.3ha	80	40	12	28	봉화 법전 소천(어은골마을숲)	
2017	2.0ha	200	100	30	70	청송 부남 중기리 마을숲 외2	
2018	3.3ha	400	200	60	140	청송 부남 구천리 마을숲 외3 영양 일월 주곡리(주실마을숲)	
2019	2.0ha	200	100	30	70	청송 현서 사촌리 마을숲 외2	
2022	1.2ha	300		150	150	봉화 잔데미 전통마을숲 등	